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엔의 날(10월 24일) 공휴일 지정〉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05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18.
3. 회부연월일 : 2025.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10월 24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은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도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UN)은 과거 6·25 전쟁 당시 유엔(UN)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 중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군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으며 이렇게 파견된 국제연합 회원국은 16개국에 이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제연합 창립과 6·25 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고자 유엔(UN)의 설립일인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일로 지정하였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은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있음.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과거와 달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엔(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공휴일에 포함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u><신설></u> <u>10.</u>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유엔의 날(10월 24일)</u>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2. 검토의견

국제연합, 즉 유엔(UN, United Nations)¹⁾은 과거 6·25 전쟁 발발 당시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유엔군의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유엔의 설립일인 10월 24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1950.9.18.)하여 1975년까지 운영해 왔음.

그 이후 1976년 북한이 유엔 산하 기구에 가입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법정공휴일 지정을 해제한 바 있으며,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유지되고 있음.²⁾

하지만, 국제연합일의 공휴일 폐지 이후 6·25 전쟁 당시 유엔의 기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어, 유엔의 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³⁾

개정안은 유엔의 설립일인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공휴일화하려는 것으로,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유

1) 유엔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임.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48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 중앙일보, 「대한노인회장, 국회에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명 서명부 전달」, 2025년 9월 11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207>

엔군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유엔의 날’을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과⁴⁾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주요 국가 및 UN에서 유엔의 설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점, 주요 선진국의 공휴일 수⁵⁾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공휴일 수(15일)가 적지 않은 점, 최근 대체공휴일(‘21년 4일, ’23년 2일)을 확대해 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전 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추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나라 전체 공휴일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점,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여 공휴일이 추가 지정될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

4)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5) 주요 선진국 공휴일 수 : 영국(8일), 독일(10일), 미국·프랑스(11일), 호주(12일)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외교부는 유엔과의 특별한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동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요 국가에서 유엔의 설립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엔의 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입법청원[청원번호 제2200228호, 이중근(대한노인회), 양부남의원 소개]이 2025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342